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 8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7월 24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년 8월 5)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증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초과현원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가축방역 전문인력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 총정원 523명 → 524명(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14명 → 515명(증 1명)
- 2) 초과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
 - 2002. 7. 31 → 2003. 2. 28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조례임.
- 제안이유와 같이 악성가축 질병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수의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98년부터 국정과로 추진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7.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2.28까지 15명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며
-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2년 7월 25일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 증원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초과현원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가축방역 전문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총정원 523명 ⇒ 524명(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14명 ⇒ 515명(증 1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9명

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정함.

- 2002.07.31 ⇒ 2003. 02.2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자치 12200~1244(02.06.11)호 및
강원도총무 12112~2189(02.06.12)호 참조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바. 조례·규칙 심의회 : 제9회 평창군조례·규칙 심의회(2002.06.27) 원안의 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총수 "523명"을 "52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14명"을 "515명"으로 한다.

조례 제1589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1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524명으로 ----- ---. 1. 집행기관의 정원 : 514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9명
조례 제1589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	조례 제1589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신 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강원도

우 200-700 / 강원도 동면서 봉의동 15번지
자치행정과 과장 : 이 후석

/전화 033)249-2989 /전송 033)249-4027

조직관리담당 : 김 닥래 담당과 회장석

문서번호 자치 12200--347

시행일자 2002.06.11 ()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총무·자치행정과장

신경화	증명	기	
접	일자	2002. 06. 15.	시
수	시간		진제
번호	347	담당	070-701
처리과	자치행정과	공	/
담당자	이수근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 지침 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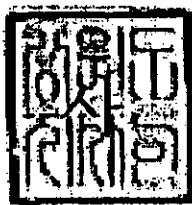
1. 행정자치부 자제12200~347호(2002. 6. 1)와 관련입니다.

2. WTO체제 이후 농산물교역 급증 등으로 인한 가축방역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방역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시군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지침을 복임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시행하되, 관련 조례·규칙개정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반드시 수의직이 확보되도록 하여 가축방역체제가 조기에 확립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지침 1부. “끝”

강원도지



수신처: 대(01-18)

市郡 家畜防疫體制 強化를 위한 人力補強 指針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계획임

江 原 道

市郡 家畜防疫體制 強化를 위한 人力補強 指針

1. 背 景

- WTO 체제이후 농산물개방에 따른 육류교역 급증으로 가축방역 체제의 취약성과
-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에 대한 국경없는 방역체제 강화 필요성 절실
- 우리나라 2000년 66년만에 과주에서 구제역 발생, 6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상당한 피해 발생
 - 금년에는 안성, 진천, 용인지역에 발생되어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관리에 혼점 노출, 가축방역 기능보강 필요성 제기

2. 地方自治團體 家畜防疫組織 運營 實態

가. 중앙과 지방의 조직운영체계

《 중 앙 》

- 농림부 ⇒ 가축방역, 축산물위생관련 제도 운영, 국가방역 예산 확보·지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가방역, 기술지도, 전염병진단 등 감정, 혈청검사, 수출입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 등

〈 지 자 체 〉

- 시도 축산과 ⇒ 국가방역정책 집행, 축산물 위생관련 인·허가, 동물용 의약품·약사 감시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가축질병 병성감정, 혈청검사, 농가방역지도, 도축검사 등 축산물 위생관리 등
- 시군(농축산과 등) ⇒ 국가방역정책(살처분, 이동통제 등)의 집행, 축산물관련 인·허가, 농가방역지도 등
※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지도소)에서 방역지도

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태 분석결과

(1) 조직현황

《전담기구》

- ▷ 시·도 : 축산관련 課에 가축위생(축산위생) 전담팀(담당) 설치·운영(9개 시·도), 나머지 7개 시·도는 축산관련 담당·팀에서 타 업무와 병행 수행
※ 시·도 가축위생연구소(9개소) 및 보건환경연구원(16개소)에서 별도기능 수행
- ▷ 시·군 : 농축산관련 課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관련 담당·팀에서 타 업무와 병행 수행

《담당인력》

- ▷ 시·도 : 16개 전 시도에서 수의직 배치·운영(67명, 평균4명)
- ▷ 시·군 : 232개 시·군·구 중 117개 시·군·구에서 수의직 배치·운영(우리도의 경우 18개시군중 횡성군만 배치)
※ 미배치 17개 시군중 13개 시·군은 축산직 배치(4개 시·군 축산수의직 미배치)

(2)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 수의직이 미 배치된 시 군의 방역수행 능력의 상대적 저하
 - 가축방역에 대한 자율행정수행 능력 및 문제발생시 위기대처 능력 결여로 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
- 관련 직위에 축산·보건 등 유사기능의 복수직렬 책정·운영
 - 수의직의 경우 수의사 면허 소지자의 고급인력인 관계로 현원확보가 어려워 결원상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가 축산 직렬로 보직되고 있음
- 또한, 일정규모의 가축두수가 있어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직무와 부합하는 직렬의 정원을 운영하지 않고
 -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 또는 농업직이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음

3. 補強方針

가. 기본방향

-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화 등 농산물교역 급증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가축방역행정 체계 보강
- 다만,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음을 고려, 전담기구의 설치는 억제하고 전담인력 보강에 중점
- 보강기준은 가축두수 등 축산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나. 인력보강 방침

○ 보강기준

- 6급 : 소3만두, 돼지10만두이상 자치단체
- 7급이하 : 소2만두, 돼지8만두이상 자치단체(단, 정원미확보 단체는 소5천두, 돼지5천두이상 기준 적용)

《축산직·수의직 미배치 시군 가축보유 현황》

속초시	소 341두, 돼지 2,598두,	삼척시	소 6,867두, 돼지 6,552두
평창군	소 13,107두, 돼지 12,212두,	고성군	소 5,840두, 돼지 8,700두

- 정원보강 : 3명(7급, 삼척1 · 평창1 · 고성1), ※ 별표1 참조
- 직렬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선 「수의」직렬 단수책정 원칙
 - 다만, 수의직 채용 수급이 곤란한 자치단체는 축산직으로 확대하여 신축성 부여(이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하여 복수직 책정)

다. 기타 조직 · 인사운용지침

- 수의직 미확보 자치단체는 결원발생 직위의 조기 수의직 충원 완료
 - 방역업무 담당자의 정원이 수의직 또는 축산직 이외의 복수 직렬의 직위(예, 행정 · 보건 · 농업직)는 정비
 - 6급 정원이 보강되는 자치단체는 가축방역위생전담팀을 설치하고 하부 인력은 자체정원을 조정하여 조치
 - 위 보강기준외의 자치단체에서 전담팀(담당급)의 확보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6급 정원을 조정하여 자체적으로 설치 가능
- ※ 수의사 현원 확보가 어렵거나 정원외의 행정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수의」를 위촉 적극 활용

4. 行政事項

- 지침과 함께 별지 시·군별 가축방역 인력보강 정원 승인 시달
- 승인신청 절차 생략(별도 승인신청 불필요)
- 가축방역 인력 조기확보('02. 6월말까지 관련 조례·규칙개정 완료)
- 시·군 가축방역 인력보강 추진상황을 2002. 6월말까지 제출

* 시군별 수의직 정원현황 - 별첨2 참조

<별첨1>

가축방역 인력보강 정원승인서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강 원 도	소 계		3명	
삼 척 시		지방수의주사보	1명	
평 창 군		지방수의주사보	1명	
고 성 군		지방수의주사보	1명	

<별첨2>

시군별 수의직(복수직포함) 정원 현황

시군별	제	현 정 원						금화보장	비 고 (현 원)		
		소재	6급			7급					
			축산· 수의	축산· 수산	농업·축산· 수의·농촌지도	축산·수의	수의				
제	24	21	11	1	1	7	1	3			
춘천시	1	1	1						축산6급1		
원주시	1	1	1						축산6급1		
강릉시	1	1				1			축산7급1		
동해시	1	1	1						축산6급1		
태백시	2	2	1			1			축산6급1 축산7급1		
속초시	-	-									
삼척시	1	-						1			
홍천군	2	2	1			1			축산6급1 축산7급1		
횡성군	3	3	1			1	1		축산6급1 수의79급2		
영월군	2	2	1			1			축산6급1 축산7급1		
평창군	1	-						1			
정선군	2	2	1			1			축산6급1 축산7급1		
철원군	1	1	1						축산6급1		
화천군	1	1	1						축산6급1		
양구군	1	1		1					축산6급1		
인제군	1	1	1						축산6급1		
고성군	1	-						1			
양양군	2	2			1	1			농업6급1 축산7급1		

강원도

우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TEL (0361) 249-2535, 행정 2535 / FAX (0361) 249-4023, 행정 4023
 총무과 총무과장 진연진, 인사담당실 재철, 당당자 박세식

문서번호 총무12112 - 2189

시행일자 2002. 6. 12

공개여부 공개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총무·자치행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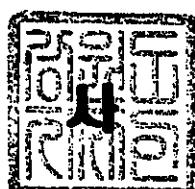
선판	제 1	2002	치 시	要約審理하여 即速까지報告
접수	일자 시간	2002. 06. 17	결재	
	번호	제 17624	공포	0/9/5
	처리 과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승우		
	심사자		심사일	— — —

제 목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

1. 행정자치부 자제12200-362(2002. 6. 10)호의 관련입니다.
2.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이 지난 2001. 7.31자로 마무리되고
3.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이 2002. 6. 10자로 공포시행(대통령령 제17624호)됨에 따라 정·현원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인력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1부. 끝.

강원도지



수신처 : 의회사무처, 녀(01,09,10,22), 더(01~18)

機構·定員規程 改正令 施行에 따른
地方自治團體 定·現員 管理指針

I. 改正令의 内容

<기구·정원규정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증개정령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
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포·시행일 : '02. 6. 10(대통령령 제17624호)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임 1

II. 改正의 趣旨

-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으로 지방공무원 56,633명을 2002. 7. 31로 감축완료함으로써
지방구조조정 마무리
☞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총감축목표 달성
- 다만,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 필요

III. 改正令의 内容解說

①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인정

- '02. 7. 31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현원에 한하여 '03. 2. 28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02. 7. 31현재 자치단체별로 결원의 총수를 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직권면직('02. 8. 1일자) 해야 함
예시) '02. 7. 31현재 전체 초과현원이 200명이고, 전체 결원이 150명인 경우 50명은 직권면직 조치
- 직종·직렬·계급별 정원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초과현원이 있는 자치단체의 초과현원과 직권면직대상자를 산정하고 관리할 경우에 적용하되
 - '02. 7. 31 직권면직시(3차 직권면직)에 적용하고
 - '02. 8. 1부터 '03. 2. 28까지는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함
 - 다만, '03. 2. 28까지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 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 가능
※ 기한연장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협의사항에 관한 지침은 추후 별도 통보
- '02. 8. 1부터는 초과현원의 총수만큼 결원의 총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초과현원의 총수를 넘는 결원에 대하여만 보충 가능

⇒

자치단체별로 '02. 8. 1에는 정원의 총수와 현원의 총수가 일치 됨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목표(총수) 달성

② 결원발생시 직종·직급별 불부합 우선 해소

-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된 경우 직종·직급별 불부합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
- 신규로 증원된 정원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에서 직종·직급별 불부합을 해소 하고도 신규충원을 해야 할 경우
 - 1차로 불부합 현원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충원하고
 - 전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신규모집 실시
- ☞ 시·도에서 자치단체별 직종·직급별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방안으로 적극 조정
- 기 통보한 지침을 참조하여 직종·직급별 불부합 적극 해소※ 자체 12200-409('00. 5. 27), 자체 12200-536('00. 7. 26), 자체 12200-755('00. 10. 14), 자체 12200-182('01. 3. 9)

③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개정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03. 2. 28까지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 ☞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를 명시
 - 조례시행일 : '02. 8. 1
- ※ 정원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별임 2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 조례에서 '03. 2. 28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에 대해 계급별 정원을 규정
 - 규칙시행일 : '02. 8. 1
- ※ 정원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별입 3

IV. 行政事項

① 후속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면직자선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운영(2002. 6. 15까지 구성)
 - 자치단체별 부단체장 소속하에 별도 설치
 -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면직기준 마련
- 직권면직기준 확정 및 면직대상자 결정시 미리 인사위원회 의결
- 늦어도 '02. 6. 30까지 직권면직대상자 확정·통보

② 직종·직급별 불부합 해소 추진상황 보고

- 보고일자 및 보고서식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별도 통보
- 동 보고는 정원과 인사(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히 작성